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보고

2022. 6.



환 경 부
감사관실

|| 목 차 ||

I. 감사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대상·종류 및 범위	1
3. 기간 및 인원	1
4. 중점사항	1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황	2
II. 감사 결과	3
1. 계약·회계 분야	4
2. 주요 업무 분야	8
3. 기타 분야	14
III. 모범사례	16
IV. 현지 조치사항	17
V. 향후 계획	17

I. 감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주요 사업분야별로 법령에 따른 위임 사무와 각종 정책사항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방안 제시

2. 대상 · 종류 및 범위

- (감사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감사종류) 종합감사
- (감사범위) '17.6월(직전 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3. 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2.3.21.~4.8.(15일)
- (감사인원) 감사반장 등 9명*(환경부 7, 산하기관 2)

* 환경부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관, 류호일, 송창일, 오정현, 이창선, 방성원),
정보화담당관실(최정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4.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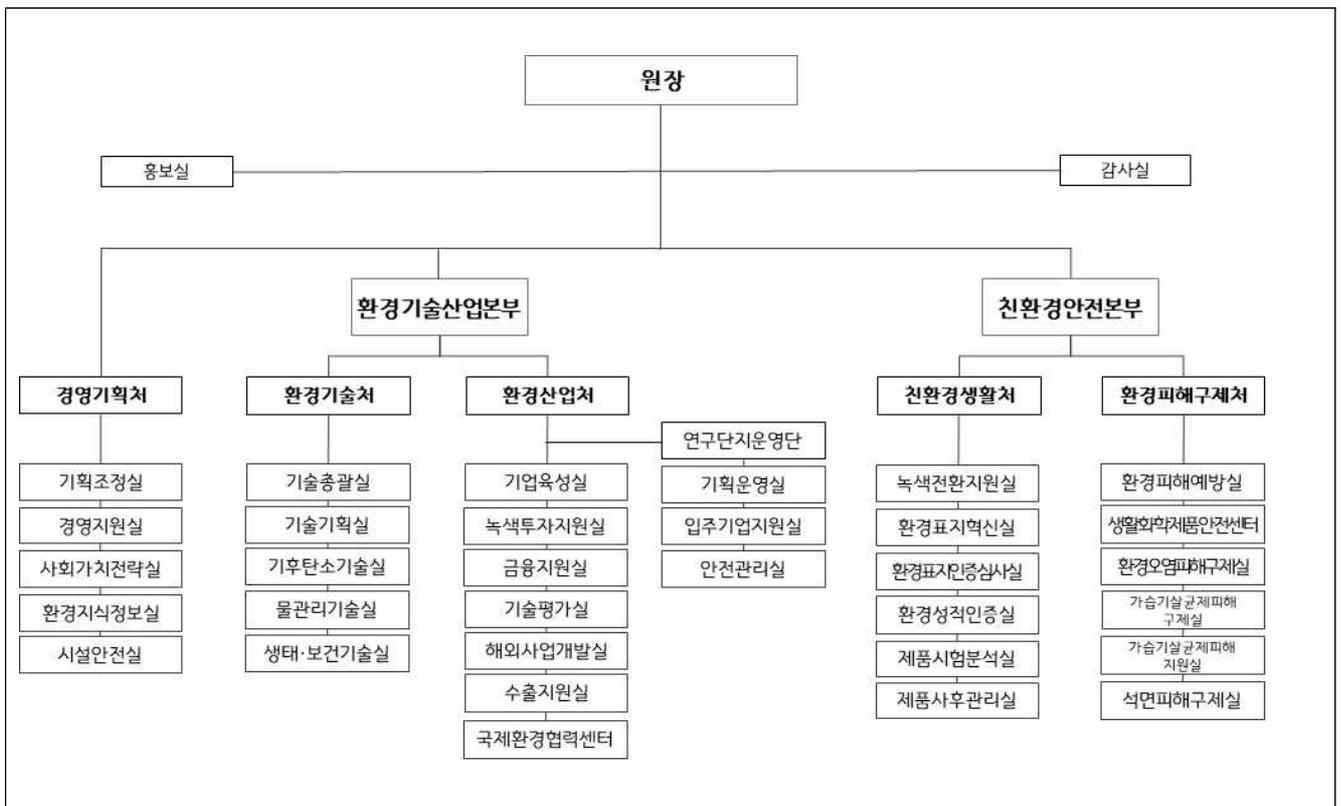
- 경영기획처
 - 계약 · 물품관리 적정성, 수의계약 사유 타당성, 정보화 사업관리 규정준수 여부, 성희롱 예방지침 현행화 여부 및 성실 이행 등
- 환경기술산업본부(환경기술처, 환경산업처)
 - R&D 분야 기획 · 선정 · 평가 등 절차 적정성, 과제 중복성 검토 및 정산관리 분야,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등록 · 관리 현황 등
- 친환경안전본부(친환경생활처, 환경피해구제처)
 - 환경표지 인증 신청접수 · 심사 · 발급 등 절차 준용 및 사후관리, 데이터 관리 적정성, 환경부(보건국 · 화학단) 위임사무 적정 수행 등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 현황

○ (연혁)

- 2000.9.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설립
- 2005.9.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
- 200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양 기관 통합)

○ (조직도)



○ (인원)

(2022.3. 기준, 현원/정원)

계	임원		전문연구직								공무직	기간제
	원장	이사	소계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전임급	원급	연구지원급	별도정원		
373/401	1/1	2/2	370/398	15/16	35/37	81/82	121/133	117/124	0/6	1/2	227/287	25/-

○ (예산) '22년 11,335억원 / '21년 11,069억원 / '20년 9,335억원

II. 감사 결과

< 처분요구 총괄(표) >

◇ 처분요구 19건(시정3, 경고·주의4, 권고2, 통보7, 모범사례1, 현지조치2)

(단위 : 건수, 명, 만원)

총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건수	금액	인원 (명)							계 (명)	일반 (명)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모범 사례 (인원)		
19	440	2	-	-	3 (440)	4 (2)	-	2	8	7	-	-	-	1	-	2

< 지적사항·모범사례 및 처분요구(안) >

분야	연번	지적사항	처분요구(안)
계약 회계 분야	1	2인 이상 견적 미실시 등 계약집행 부적정	경고
	2	연구용역 수행인력 참여율(100%초과) 관리 부적정	통보
	3	예산집행 및 자산관리 부적정	부서주의/시정
주요 업무 분야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급권 변동 관리 부적정	부서주의 /시정
	5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관리 미흡	통보
	6	환경정책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보완 필요	통보
	7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미흡	통보/권고
	8	연구개발정보(Eco-PLUS 시스템) 운영·관리 미흡	시정/부서경고
기타 분야	9	환경정책자금융자 중간점검 미실시	통보
	10	정보화사업 완수단계 산출물 검토 부적정	권고
	1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보안성검토 미실시	통보
	12	재산종합보험 가입방법 개선 검토	통보
모범사례	1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콜링유(건강상담 등) 서비스 실시	-
현지조치	14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세목조정	-
	15	기타운영비 지급규정 관련 검토·조치 필요	-

1 계약회계 분야

① 2인 이상 견적 미실시 등 계약집행 부적정

-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고,
 - ※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 제한적으로 가능
 - 「판로지원법」 제9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시에는 중소기업자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조정 필요
- (실태) 기술원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1인 견적으로 계약금액을 산정 하고(5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 생산여부 미확인(1건)

< 2인 이상 견적 미실시 계약 현황 >

연번	건 명	계약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1	2020년 지역아동센터 실내환경 개선 지원사업	AAA	97,000	2020.09.24.~ 2020.12.04.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 콜센터 운영	BBB	99,892	2020.12.01.~ 2021.06.10.
3	KEITI 임·직원 근무복 구매*	CCC	62,540	2020.09.01.~ 2020.09.18.
4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	DDD	82,093	2020.12.02.~ 2020.12.09.
5	환경책임보험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EEE	100,000	2021.01.08.~ 2021.06.30.

* 사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관련법령 위반

- 또한,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2~5배 증가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액의 조정(추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3건)가 있음

< 주요 계약변경 현황 >

연번	건 명	계약금액(천원)		계약보증 조정	계약 기간
		당초	변경		
1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및 무단사용 예방 지원	61,820	295,200	×	'20.05.20. ~ '20.11.30.
2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모니 터링 및 자율시정 운영	66,900	305,900	×	'20.05.26. ~ '20.12.31.
3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설비 및 제품 모형 제작	98,900	168,130	×	'20.06.23. ~ '20.12.11.

⇒ (처분의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금액 조정에 소홀한 계약 담당자와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에 소홀한 계약 담당자에게 각각 “경고” 요구

② 연구용역 수행인력 참여율(100%초과) 관리 부적정

○ (기준) 연구용역 인건비는 매년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며, 적정 용역참여율은 내실있는 과업 추진을 위해 중요

*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기준단가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동 기준에 준하여 단가 증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기부)에서도 영리연구기관의 인건비 계상한도를 월 단위 100% 이하로 제한

○ (실태) 기술원 연구용역 수행빈도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참여율 검토 결과, 3개 업체에서 참여율 100%를 초과하는 사례 발생

< 연구용역 참여빈도 상위 5개 업체 중 참여비율 100% 초과 사례 >

용역 수행기관	참여건수 (‘17~21년)	참여비율 100% 초과 사례
□□□□	16건	‘18년 A 105%, B 115% 등 2명
△△△△	13건	‘17년 C 120%, D 140%, ‘18년 : E 110% 등 3명
▮▮▮▮	13건	-
▯▯▯▯	11건	-
⊠⊠⊠⊠	10건	‘18년 F 180%, G 205%, H 130%, I 165%, J 140% 등 5명

⇒ (처분의견) 기술원에서는 연구용역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연구용역 충실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영지원실에 “통보”

③ 예산집행 및 자산관리 부적정

[일반수용비 부적정 집행 및 취득자산 미등재]

- (기준)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210-01)로 구입하고 자산취득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하며,
 - 내구성 물품은 취득 시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의 작성·보관 필요
- ※ 「예산집행 및 통제지침(기술원)」, 「고정자산관리 및 구매검수 시행세칙(기술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실태) ‘18~’21년 내구성 물품(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7건 23수량) 및 상용 SW(운영체제, 백신 등 33건) 등 자산성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고,
 - 이를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아 재물조사 대상에서 누락

[정기재물조사 절차 미이행]

- (기준) 정기재물조사는 각 부문(사용)책임자가 재물확인 결과를 총괄 책임자에게 보내고, 총괄책임자는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 (실태) ‘18~’21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정기재물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례 확인

< 정기재물조사 명세(‘18~’21년도) >

구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실시 (실시 내부보고 공문 제출)	실시 (실시 내부보고 공문 제출)	실시 (실시 내부보고 공문 제출)	고정자산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수행 (별도 실시 공문 X)
조사결과 보고	X	O	O	X
각종 물품 대장 관리	비공식 (자산대장, 처분대장 ^{불용결정})	공식 (자산대장, 불용예정, 처분대장 ^{불용결정})	공식 (자산대장, 처분대장 ^{불용신청목록})	비공식 (자산대장, 처분대장 ^{불용신청목록})

[물품 불용 처리 절차 미이행]

- (기준) 불용자산 발생 시 자산총괄책임자는 사용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실태조사 후 불용결정을 하고 나서, 폐기·매각·양여 등 처분
 - 또한, 고정자산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위원회***를 두고,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의 중요자산의 불용결정 등을 심의
- * 위원장(경영기획처장) 1명과 5명 이내 위원(선임부서 장)으로 구성, 간사는 자산 총괄책임자
- (실태) 기술원에서는 '19년도를 제외한 '18~21년도에 불용결정 절차 없이 정기재물조사 시 불용 신청된 물품을 처분하였으며,
 - 자산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자산(2건)의 불용결정도 심의 절차 없이, 정기재물조사 시 불용예정 물품 등으로 분류 후 처분

< 자산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미수행 내역 >

구분	자산번호	물품구분	품명	취득일자	취득단가	자체분류	현황
'19년	1000000734	기계 장치	ECOEXPO 미디어타워	2010-12-29	48,000,000	불용예정 ('20.2.)	폐기
'20년	1000000549	기타 미분류	UPS배터리	2009-06-12	16,500,000	처분대장 ('21.3.)	폐기

[SW 관리대장 미작성]

- (기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SW 기관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SW 관리대장과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
- (실태) 기술원은 '21년 2분기에 1차례 SW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 외에는 '18년 이후 분기별 SW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음

※ SW 설치 현황표는 자체 운용 중인 자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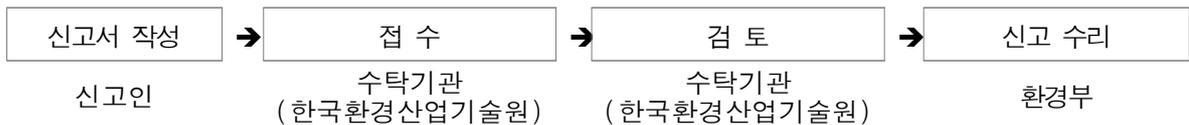
⇒ (처분의견) 자산 관련 예산집행과 재물조사 불용물품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경영기획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물품관리시스템 등에 등재되지 않은 취득자산은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2 주요업무 분야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급권 변동 관리 부적정

-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수급권자·사업자 등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신고하고,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는 기술원장에게 신고 필요
- ※ 동일사유로 민법 등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법 제25조)
-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은 수급권 변동 신고서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기술원은 신고서를 검토하고 환경부는 신고수리를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24호에 따른 절차 >



- (실태) 기술원으로부터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중 345명이 제조기업의 손해배상액을 수령함으로써 수급권 변동이 발생한 바,
 - 기술원이 제조기업 등으로부터 수급권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아 수급권 변동 검토 후 환경부에 제출·수리 절차를 거쳐야 함
 - 기술원은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검토·결재 없이 자체적으로 지급을 중단

< 폐질환 피해자 합의현황 >

폐질환 피해자	3개사 사용 피해자	배상합의 현황				구제급여 수급자
		제조사				
		계	◇◇	ⓂⓂ	ⓄⓄ	
489	443	434	403	26	5	345

- 또한,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 생존자 67명의 사망 후 수급권자 사망 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요양생활수당 2건(4,407,770원) 과지급한 사례* 확인

* (사례1) 사망 이후 요양생활수당 4개월분 과지급
 (사례2) 요양생활수당 정산 시 1개월분 중복지급

⇒ (처분의견) 수급권 변동과 관련하여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슴기살균제피해지원실에 “주의” 를 요구하고, 과지급된 영양생활수당에 대해 회수토록 “시정” 요구

②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관리 미흡

[인증심사원 인증참여 편중문제]

- (기준) 기술원은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심사를 위해 외부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 ※ (관련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서류검증, 현장검증, 인증기간 연장 등 인증기준 관리나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등의 인증 업무를 지원
- (실태) '21년 인증심사원 79명(2,070건 심사) 중 연간 120건 이상 심사자가 6명(838건 심사, 전체 대비 40.5%)으로 과다 편중되고,
 - 처리 기간은 2.1일당 1건(연 252일 기준)으로 부실한 민원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인증심사* 과다 편중 해소 필요
 - * (처리절차) 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검토서 작성, (민원기한) 30일 또는 15일 (검토항목) 공통기준, 적용범위, 환경·품질기준, 소비자정보, 표시방법, 기타사항 등
 - ※ 외부인증심사원의 현장심사 비율 95%('21년)

[인증심사원 모니터링 평가방법 및 후속조치 관련]

- (기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원장은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연 1회 평가* 실시
 - * (내부평가, 60점) 심사원의 전문성, 명확성, 신속성, 청렴성, 친절도, 숙련도 등 6개 항목 (외부평가, 40점) 현장심사 진행 심사원의 친절도, 전문성 등 2개 항목
- (실태) 외부평가는 인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응답 평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관대한 점수 부여로 평가 유용성에 한계
 - ※ 평균점수는 40점 만점에 '19년 39.0점, '20년 39.4점, '21년 39.3점
 - 또한, 평가점수가 낮은 심사원은 배정을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3년 연속 하위평가 심사원 등에 대한 제한 사례 없음

⇒ (처분의견)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배정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심사원 편중문제를 해소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익명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과 하위평가 심사원 참여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표지인증심사실에 “통보”

③ 환경정책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보완 필요

-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25조제6항**에 따라 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과제간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함
 - R&D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제선정단계에서 내실 있는 중복성 검토 필요
 - * 전문기관의 장은 발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 실·국, 과학원 및 생물자원관(필요시)에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 요청하여야 함
 - **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태) ‘중복성 검토’는 과제기획·선정의 핵심절차임에도, 판단기준·검토방법, 환경부 보고 등에 대한 일관적·세부적 기준 부재
 - 최근 과제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보직 실시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과 전문성 약화로 중복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중복성 검토 관련 사례 >

- (과제) ○○○○○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예산/연구기간 : 2,340백만원(정부출연 1,830백만원)/’21.4월~’24.12월
 - 주요내용 : ○○○○○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 구축 및 표준 체계 확립
- (전문가 의견) 과제 발굴 및 기술연구회 검토 과정(’20.5~10월)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개발·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배출시설관리시스템과의 중복성 제기
- (관련 부서(기술총괄실) 검토 실태) ①3차에 걸친 중복성 문제 검토과정의 내부보고·결재문서 등이 부재, ②전문가 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아 공단 데이터와 연계한 촘촘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전 차단, ③중복성 문제와 논의내용이 환경부에 未보고

⇒ (처분의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판단 기준 및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과제발굴과 선정단계 등에서 제시된 중복성 의견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서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기술총괄실에 “통보”

④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미흡

- (기준) 기술원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담관리위원회는 당해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진도관리
 -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34조
 - 특히,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및 시작품 구입·제작이 포함된 과제는 해당연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필요
 -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주요 연구비 집행실적, 연구노트 작성 실태,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을 확인
- (실태) 선정 당시 중복성 문제 제기가 된 사업의 경우,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장확인이 미흡
 - 연구개발과제 기획 당시 기술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기록, 관리부서(기후탄소기술실)로 전달되지 않아 관리부서의 현장 확인시 검토 미흡
 - * 한국환경공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연계시스템 개발, 활용 불가한 경우 신규로 시스템 구축
 -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수행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 했어야 함에도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 대응 곤란

< 연구개발비 실적확인 미흡 사례 >

- (재료비) 정산시스템에 등록된 영수증을 보면, IoT 계측기 1개당 단가는 411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IoT 계측기 비용(230만원)과 차이가 있고 전류 센서 단가는 1개당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전류 센서(8만원)와 차이가 있음에도 그 사유에 대한 확인 미흡

- (회의비) 연구개발기관 직원 다수와 외부 인원 1명이 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식사비를 청구하였는데, 그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출장비가 미지급되었음에도 그 사유에 대한 확인 미흡

⇒ (처분의견) 연구개발과제 기획 당시 논의된 내용이 과제 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전담관리위원이 내실있는 진도관리 및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술총괄실에 “통보” 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현장실태 조사를 충실히 실시하도록 기후탄소기술실에 “권고”

⑤ 연구개발정보(Eco-PLUS 시스템) 운영·관리 미흡

-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기술원은 연구개발성과 공개·활용 및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Eco-PLUS 시스템을 구축하여 '12년부터 운영중
 -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Eco-PLUS는 환경분야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최신성 확보의 기초적 자료로서 시스템 공개기간과 방법 등 엄격 관리 필요
 - * 최종보고서는 제출 후 3개월 이내 공개하고, 비공개 시 기간 등록
 - 또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정보 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상시적으로 입력

[최종보고서 관리 미흡]

- (실태) '17년 이후 종료사업 총 590개 과제 중 67개의 최종보고서 검토일 정보나 최종보고서가 Eco-PLUS에 미등록 상태
 - * '17년 환경부 종합감사시 동일사항으로 시정·주의 조치
 - 또한, 비공개로 등록된 103개 과제 중 96개 과제가 공개 대상임에도 비공개 과제로 등록되어 있고, 2개 과제는 비공개기한 미등록

[제재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연계 미흡]

- (실태) 제재조치 정보는 타기관에서 신규 연구개발사업 관련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철저한 정보입력이 요구됨에도,
 - '15~'22년, 153개 제재사항 중 11개의 사항이 NTIS에 미입력

⇒ (처분의견) 반복적으로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소홀하고 제재사항을 미입력한 환경기술처에 “경고” 및 “시정” 요구

⑥ 환경정책자금용자 중간점검 미 실시

- (기준)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지원 목적 등으로 재정 용자금 3천억원과 민간재원 용자금 1천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용자업무 수행
 - 사업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해 승인심사, 중간점검, 완료점검 등 실시
 - ※ (관련규정)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환경정책자금 용자업무 처리지침」

- (실태) 환경정책자금 용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완료점검만 실시
 - 승인취소 또는 자금회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해연도 중간 점검을 통해 회수 가능한 자금의 재대출 기회를 갖지 못함

< 환경정책자금 용자지원 점검 후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결과 >

구분	완료점검 후 승인취소 수	승인 금액	취소 금액	중간 점검	완료 점검	회수 여부	주요 취소사유
계	48개	23,265 백만원	6,462 백만원	미 실시	48건 전체 점검 실시	전체 회수 완료	-
2020년	22개	11,074 백만원	3,856 백만원	미 실시	22건 점검 실시	전체 회수 완료	증빙서류 부적정, 허위사실(기 완공 시설) 등
2021년	26개	12,191 백만원	2,606 백만원	미 실시	26건 점검 실시	전체 회수 완료	증빙서류 부적정 목적외 사용(수익 사업) 등

⇒ (처분의견) 용자사업에 대한 통제 합리화 및 부적정 사업에 대한 조기 검토·회수를 통해 타 기업이 적기에 대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점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금융지원실에 “통보”

3 기타 분야

① 정보화사업 완수단계 산출물 검토 부적정

-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에는 단계별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품질·산출물 등을 확인·통제해야 하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필요
 - (실태) 사업부서에서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제출·등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수결과를 통보하고, 계약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19~'21년 정보화사업 146개 중 샘플로 추출한 34건의 산출물 검토 결과, 단계별 산출물을 100% 모두 인수한 사업은 9건에 불과
- ⇒ (처분의견) 정보화 사업부서에서는 검수 시 산출물의 적합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확인 후 사업비용을 지급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산출물 검수절차를 준수하도록 경영지원실에 “권고”

②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보안성검토 미실시

- (기준) 「전자정부법」,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기술원의 정보화사업 발주 전에 환경부(정보화담당관)와 사전협의 필요
 - 또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필요
 - (실태) 최근 3년('19~'21)간 기술원의 정보화사업 내역 중 사전협의 미실시 건이 39건, 보안성검토 미실시 건이 18건이 있음
- ⇒ (처분의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및 보안업무 지침 등에 따라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환경지식정보실에 “통보”

③ 재산종합보험 가입방법 개선 검토

- (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 및 그 종물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는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음
- (실태) 기술원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을 본원(서울)과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를 나누어 별도 가입함에 따라
 - 본원의 경우 건물 외의 부지(주차장, 조경시설 등)에서의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 연구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임대공간을 포함하여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①입주업체(167개소)가 보험을 별도 가입(123개소)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의 가입물건을 제외하거나 ②미가입(44개소)한 경우 업체로부터 보험료 징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음

< 기술원 재산종합보험 가입현황 >

구분	부분	가입금액/면적	보험료(원)	가입기간
본원	재산종합위험	19,388,194천원	1,842,500원	2021.10.22.~ 2022.10.22.
	제3자배상	16,173.68㎡ (건물 내부로 한정)	690,300원	
환경산업 연구단지	재산종합위험	80,080,741천원	10,902,120원	2021.06.19.~ 2022.06.19.
	제3자배상	51,660.66㎡ (외부시설 포함)	10,493,931원	

※ 수자원공사의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본사에서 일괄 가입('06년~)하면서 보험료 절감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였고, 임대시에는 임차인이 견적한 금액과 공사가 가입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하여 중복가입 문제 방지

⇒ (처분의견) 본원과 연구단지의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본원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주기업 등 임대공간에 대한 가입공백이나 중복가입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설안전실에 “통보”

III. 모범사례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콜링유 서비스 실시(가슴기살균제피해지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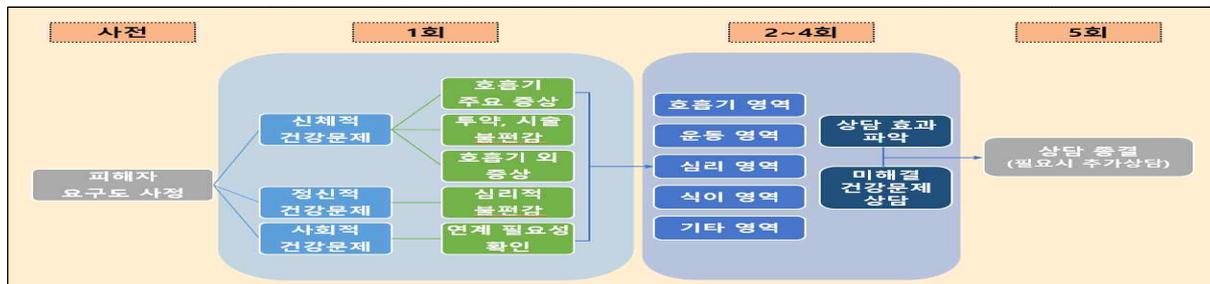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서비스 개요

- (배경)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구 지속
 - * '20년도 피해자 의견수렴 결과,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구 1위(35.2%)
- (개요) ①전문 간호인력*이 피해자와 라포(유대감) 형성 → ②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건강상태 파악 → ③건강상태 분석에 따른 분야별·맞춤형 건강상담(호흡기·운동·심리·식이·기타 등) → ④피해자 상황에 맞는 유관기관 복지서비스 안내
 - * (자격요건) 간호사, (수행내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보건활동

□ 추진내용 및 성과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103명) 대상으로 600회 콜링유 서비스 진행
 - 유관기관 복지서비스* 30건 연계, 심한 우울증 피해자(4명)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극단적 선택 예방
 - * 타 기관 복지서비스(정신건강 센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장애인 등록 등)
 - 콜링유 서비스 이후 신체건강 8.3%, 정신건강 8.0% 향상 효과(21.12)

<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프로세스 >



-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대상자 및 서비스 내역 확대(21.6월~)

* (대상) 중증피해자 → 피해자 전체, (대상자 확대) 49명→103명, (상담횟수) 최대 6회 → 최대 10회,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추가 등

○ 건강증진 물품(수동 흉벽진동기, 재활용품 등) 제공 및 교육실시 등

플루터*	롤링 마사지기	스트레칭 로프
		

* 흉벽을 통하여 진동을 주어 폐 내의 점액 침전물을 배출시키는 수동식 흉벽 진동기

건강정보 제공	상담자 전문교육
 	 <p>직업건강협회, 가슴기살균제피해자 상담지원</p>

IV. 현지 조치사항

번호	지적사항	조치사항
1	○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세목조정 사례 -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전용절차 없이 부서에서 자체 세목조정	- 예산 전용절차에 따른 승인 후 사용
2	○ 기타운영비 지급 규정 신설 필요 -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부서 다과비를 직접 사용중인 바, 과운영비를 지급하고 과운영비에서 다과비 사용 등 예산집행 지침 준수 필요	-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집행 검토·조치

V. 향후 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산업기술원에 처분(조치) 요구(6월)
-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홈페이지)
- 모범사례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추천. 끝.